

국가지정문화유산(공·능) 공개 제한 알림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(공·능)의 공개를 제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대상 국가지정문화유산: 사적 ○○○
- 소재지:
- 제한지역:
- 제한사유:
- 제한기간:
- 연락처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(00) 000-0000)
- ※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공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사람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 가 유 산 청 장

※ 안내판 제작 규격 등

- 규격: 가로 1.2m × 세로 0.8m
- 재질: 철재 또는 목재
- 색상: 흰색(바탕 색), 검정색(글씨 색)